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13.(목) 16: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2년 10월 5일

3.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에 대한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 최근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¹⁾에 이어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범 ‘엘’ 사건²⁾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음.
- 더욱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면서 지난 2018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5년 동안 학교 내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³⁾에 달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1)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2)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3) ※ 2018년 ~ 2022년 8월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말 현재
218	464	427	461	290

자료 : 교육부

-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기관	법령명	공포일
1	서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03.25
2	경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0.11.12
3	경남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11.04
4	경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2.01.03
5	대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2021.12.30
6	세종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2.04.20
7	울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2021.07.01
8	제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2022.01.12
9	충남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2.10.11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해,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등에 의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과정을 평균 15차시 이상 편성·운영 중에 있음.

관내 학교 학년별 성교육 평균 시수

급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성교육 실시 결과 현황(학년별 평균 시수)						계(평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259	4,213	83,795	15	15	15	15	15	15	15
중	129	1,703	42,428	16	16	16				16
고	85	1,970	39,877	16	15	16				15
특수	10	271	1,304	15	15	15	15	15	15	15
계	483	8,157	167,404	15	15	15	15	15	15	15

성교육 예방교육 실시 현황

급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학생(명)			교직원(명)	
	교육대상인원(학급수)	교육실시인원(학급수)	급당교육시수	교육대상인원	교육실시인원
초	83,791 (259)	83,790 (259)	4	11,174	11,108
중	42,426 (129)	42,418 (129)	2	5,713	5,669
고	39,679 (85)	39,015 (85)	5	5,707	5,609
특수	1,304 (10)	1,302 (10)	4	902	894
계	167,200 (483)	166,525 (483)	4	23,496	23,280

※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 다만, 이러한 교육과정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간 의무이수 시간을 제도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해 상담을 비롯한 전문적 보호·지원 시설과의 연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충청북도에서도 지난해 제정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8조¹⁾에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 기반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